

# 정유회사의 저유소 부지에 대한 부동산관련법 규정완화협조의뢰 요청 건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관련법(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하면 정유회사의 저유소용부지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 고율의 세율적용 또는 비업무용부동산 성격의 유희토지에 해당하여 과중한 세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과세 주무부서에 건의문을 제출하였는 바, 저유소부지에 대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의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종합토지세

- 주무부서 : 내무부 지방세제국 시군세과
- 과세내용 : 저유소부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업무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합산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03.~2%)이 적용되므로 종합토지세 부담이 정유회사별로 약 3~6배 증가하게 됨.
- 건의사항 : 저유소부지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4(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 분리과세(0.3%)하여야 함.

- 첨부서류 : 내부장관에 대한 건의 공문사본.  
지방세법 관련조문 사본.  
세정신문 보도자료 사본.

## 2. 토지초과 이득세

- 주무부서 : 재무부 세제국 재산세제과
- 과세내용 : 저유소부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면 첨부검토서와 같이 저유소부지의 상당부분이 기준면적초과로 유희토지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됨.
- 건의사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대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유사한 토지)에 석유사업법에 의한 정유회사의 저유소용부지를 추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 첨부서류 : 재무부 장관에 대한 건의공문 사본.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조문 사본  
저유소부지에 대한 검토서 사본

## \*참고사항

택지소유상한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유희저장 및 송유설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공공시설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첨부서류 : 택지소유상한법 관련 조문 사본.

1990. 4. 16  
대한석유회회